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92
----------	----

2014년 9월 23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 2014년 9월 5일
- 나. 제안자 : 김진영 의원(찬성자 10명)
- 다. 회부일자 : 2014년 9월 5일
- 라. 상정일자 : 제256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14년 9월 23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진영 의원)

○ 제안이유

「도로법」 및 하위법령 전부개정(2014.7.15.)내용에 맞추어 근거법령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9조2, 제11조, 별표1, 별표2

○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3. 검토보고요지 (수석전문위원 김종식)

-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9월 5일 김진영 의원(찬성자 10명)이 발의하여 9월 12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도로법」 및 하위법령이 2014년 7월 15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 금번 도로법의 전부개정은 도로망의 정비, 적정한 도로관리 및 도로 자산의 효율적 활용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도로점용허가,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분할납부, 조정, 소액부징수 및 반환 등에 관한 조문체계가 변경되어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반영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공작물·물건·그 밖에 시설물로서 「도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5항제10호”를 “공작물·물건·그 밖에 시설물로서 「도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로 한다.

제3조 “영 별표 2”를 “영 별표3”로 한다.

제4조 제1항 중 “도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영 제28조”를 “도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영 제54조”로 하고 “법 제94조”를 “법 제72조”로 한다.

제5조 제2항 중 “영 제43조제2항”을 “영 제71조제2항”로 한다.

제6조 제1항 중 “영 별표3”을 “영 별표4”로 한다.

제9조 제1항 중 “법제42조제3호”를 “법 제68조제3호”로 하고 제2항 중 “법 제41조제2항”을 “법 제66조제2항”로 하고 “법 제84조”을

“법 제97조”로 하며 “영 제43조제6항과 제7항”은 “영 제71조 제5항과 제6항”로 한다.

제9조2 “영 제74조제1항의 별표 5 중 제2호 나목”를 “영 제105조 별표 7 중 제2호 가목”로 한다

제11조 1항 중 “법 제38조”를 “법 제61조”로 하고 “「도로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2호”를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로 하며 2항 중 “법 제42조”를 “법 제68조”로 한다.

별표 1 “영 별표 2”를 “영 별표3”로 한다.

별표 2 “법 제38조제1항”을 “법 제61조제1항”로 하고 “법 제101조제2항제1호”를 “법117조제2항제1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따른 이자를 붙인다. 다만, 「지방세 기본법」 제8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제6조(점용료등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점용료는 영 별표3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9조(점용료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① 징수하여야 할 점용료 및 변상금이 5,000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제42조 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 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법 제41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법 제8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영 제43조제6항과 제7항에 따라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9조의2(과태료 부과·징수) 시장이

-----.

제6조(점용료등의 조정) ①-----

----- 영 별표4-----
-----.

제9조(점용료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①-----
-----,법 제68조 제3호-----
-----.

② 법 제66조제2항-----

----- 법 제97조-----
----- 영 제71조제5항과 제6항-----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의2(과태료 부과·징수) -----

영 제74조제1항의 별표 5 중 제2호 나목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38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42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생략>

별표 1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단위 : 원)
		점용단위	기간단위	
1. 영 별표 2 제7호에서 정한 점용물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노점			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전통시장의 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3을 곱한 금액
2. 영 별표 2 제11호에서 정한 점용물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주택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전통시장내 시설 등			토지가격에 0.03을 곱한 금액
	신·재생에너지 설비(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영 제105조 별표 7 중 제2호 가목

-----.

제11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61조

-----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 -----
-----.

② 법 제68조-----

-----.

③ <현행과 같음>

별표 1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단위 : 원)
		점용단위	기간단위	
1. 영 별표 3 제7호에서 정한 점용물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노점			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전통시장의 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3을 곱한 금액
2. 영 별표 3 제11호에서 정한 점용물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주택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전통시장내 시설 등			토지가격에 0.03을 곱한 금액
	신·재생에너지 설비(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별표2

위 반 행 위	근거법조문	부 과 기 준	과태료상한금액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법 제101조 제2항제1호	초과 점용면적 1㎡ 이하 50,000원, 1㎡를 초과하는 매 1㎡ 이내 마 다 100,000원씩 추가	1,500,000원

별표2

위 반 행 위	근거법조문	부 과 기 준	과태료상한금액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법 제117조 제2항제1호	초과 점용면적 1㎡ 이하 50,000원, 1㎡를 초과하는 매 1㎡ 이내 마 다 100,000원씩 추가	1,500,000원